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단5898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 2019. 5. 16.

판결 선고 2019.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2,007,172원 및 그 중 24,092,343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망 D,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4,400만원, 보험기간 2015. 2. 28.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망 D은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망 D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망 D은 원고에게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5.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다. 이후 망 D이 E과의 약정을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8. 28. E에게 보험금으로 40,153,906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 위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13,191,382원이다.

라. 한편 망 D은 2015. 7. 16. 사망하였다. 당시 그의 가족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F과 G(이들은 모두 미혼이다)가 있었고, 어머니 H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387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F과 G는 2015. 12. 11. 같은 법원 2015느단3879호로 상속포기심판을 각 받았고, 위 각 심판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이 2015. 7. 16. 사망한 후 그 자녀인 F, G가 상속포기를 하였고, 망 D의 사망 당시 손자녀가 없는 반면 직계존속인 어머니 H이 있었으므로, 망

D의 재산은 피고와 H이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 D의 배우자인 피고와 직계존속인 H의 상속분은 각 3/5과 2/5이다. 나아가 피고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구상원금과 2018.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53,345,288원(= 40,153,906원 + 13,191,382원)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2,007,172원(= 53,345,288원 × 3/5) 및 그 중 구상원금 40,153,906원의 피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24,092,343원(= 40,153,906원 × 3/5)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인 2019. 5. 16.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광섭